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8. 5. 22.

행정위원회

1. 審 査 經 過

가. 제출일자 : 2008년 5월 13일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08년 5월 19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36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2008. 5. 21) 상정 의결

2. 提 案 說 明 의 要 旨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송요출)

가. 제안이유

- 청와대, 행정안전부의 창의혁신 관련업무 추진부서 및 팀의 축소에 따라 2008. 6.30까지 한시기구로 설치된 창의혁신단을 폐지하고 관련 업무는 팀 단위 기구로 이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부구청장이 겸임하던 국단위 행정기구인 창의혁신단이 2008. 6.30까지 존속기한으로 폐지(안 제4조)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정화조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7조 제14호)
- 도시환경국에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 제2항 제16호)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김 병 옥)

-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등 국가 행정기관 내 창의혁신 관련 업무 추진부서 및 팀 기구의 축소에 따라 창의혁신기구는 2005. 9. 5 혁신기획단을 구성하여 2008. 6.30까지 한시적으로 설치된 기구이므로 이를 폐지하고, 창의혁신 관련 업무는 팀 단위의 기구로 행정국 기획홍보과로 이관하여 업무를 수행코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審査結課 : 原案可決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140 호
----------	---------

제출년월일 : 2008. 5.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청와대, 행정안전부의 창의혁신관련업무 추진부서 및 팀의 축소에 따라 2008. 6. 30까지 한시기구로 설치된 창의혁신단을 폐지하고 관련업무는 팀단위 기구로 이관하여 수행

2. 주요내용

<한시기구 폐지>

○ 창의혁신단 폐지

- 부구청장이 겸임하던 국단위 행정기구인 창의혁신단이 2008. 6. 30 까지 존속기한이었으므로 폐지(안 제4조)

※ 창의혁신담당관은 규칙개정으로 폐지

3. 참고사항

가.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⑥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2) 입법예고(2008. 4. 29 ~ 5. 6)결과 : 의견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 부구청장 밑에 감사담당관과 교육지원담당관을 둔다.

제7조제2항제14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2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 기관의 설치) 부구청장 밑에 창의혁신단(한시기구)과 감사담당관, 교육지원담당관을 둔다.</p>	<p>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 기관의 설치) 부구청장 밑에 감사담당관과 교육지원담당관을 둔다.</p>
<p>제7조(주민생활지원국) ① (생략). ②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3호(생략). <u>14호. 정화조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u></p>	<p>제7조(주민생활지원국) ① (현행과 같음) ② 1.~13호.(생략) <삭 제></p>
<p>제8조(도시환경국) ① (생략). ② 도시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5호(생략). <신 설></p>	<p>제8조(도시환경국) ① (현행과 같음) ② 1.~15호 (현행과 같음) <u>16호.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u></p>